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3월 15일

회 사 명 : 광진실업(주)
대 표 이 사 : 허유석, 허정도 (인)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106
(전 화) 051-220-9130

내부회계관리자 : 정훈국
(전 화) 051-220-911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내부회계관리자」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가 회사의 상근이사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 「회계관련조직」이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전산시스템」이란 회계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전산장부 및 이를 운영 하고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2 장 운 영

제 3 조 (회계처리 및 공시의 일반원칙)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는 임· 직원은 본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공시 관련 각

종 법규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상기 규정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 및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 4 조 (회계정보의 기록·보고 등)

회계정보는 회계처리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이하"처리"라 함)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계정보는 이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분류하여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 2) 회계정보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전산장부에 기록된 회계정보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3) 회계관리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내부회계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계정보 오류 통제 및 내부 검증)

- 1) 회계관리부서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을 통제하여야 하고, 필요시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회계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계장부의 관리)

- 1)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회계장부는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일괄 관리한다.
- 2) 회계장부는 위조,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운영 시스템에 의한 전산장부를 수정할 경우 수정자 및 수정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 3) 회계장부의 수정은 제 5조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관리·운영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다.
- 2)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관련조직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관리·운영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3) 내부회계관리자 및 부서별 관리·운영 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업무분장과 책임)

- 1)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업무는 회계관련조직이 수행한다.
- 2)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야 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되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동 운용실태보고서는 본사에 비치한다.
- 4)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내부회계관리자는 외부회계감사인 매 반기 감사업무 수행시 마다 제2항 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 정 제3조에 의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 여야한다.

9 조 (규정준수 이행의 강제)

- 1)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계관리부서 및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사내· 외 교육을 정기적 으 로 실시한다.
- 2) 내부회계관리자는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그 범위, 정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3) 만일 대표이사 등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지시 하는 경우 지시받은 임직원은 이 사실을 감사에 보고하여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반시 제재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및 훼손하는 행위,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직원징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징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회계관련조직이 입안하여 내부회계관리자의 발의및 감사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박은환	감사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	051)220-9110
경영지원 총괄	정훈국	내부회계 관리자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사회 및 감사)	-	051)220-9110
회계 처리, 자금 운영 및 전산운영부서	우두식	부장	- 회계관련 업무 - 자금관련 업무 및 공시업무 - 전산업무 - 인사, 노무, 자산관리 업무	-	051)220-9130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 100)	
감사(위원회)	1	1	0	0	144
이사회	4	0	0	0	-
경영지원 총괄	1	1	0	0	271
회계 처리, 자금 운영 및 전산운영부서	4	1	0	0	207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frac{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정훈국	051-220-9110	부	4년 2개월	22년 7개월	-	-
회계담당직원	우두식	051-220-9130	부	4년	17년 3개월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4-01-26	허유석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주주.이사회.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이사회 및 감사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대 표 이 사 허 유 석

내부회계관리자 정 훈 국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4-01-31	박은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조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 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1월 31일

감 사 박 은 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평가보고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 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 도 모범규준의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 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	-	-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광진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2023년 3월 17일

우리는 첨부된 광진실업 주식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광진실업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